

실력과 성실로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합니다.



전한나 CPA

전석호 회계법인

LAWRENCE JEON & CO.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A PROFESSIONAL CORPORATION

3435 Wilshire Blvd. Suite 1990 Los Angeles, CA 90010

Office: 213-387-0505 Fax: 213-387-3948

www.JeonCPA.com

hanna@jeoncpa.com



전석호 CPA

2025년도 세금보고관련 주요 개정세법 사항

One, Big, Beautiful Bill Act

One, Big, Beautiful Bill Act는 연방 세금, 세액공제 및 공제 제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법은 2025년 7월 4일에 Public Law 119-21로 제정되었으며, 2025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세금 변경 사항의 내용을 자세히 검토해 주세요. <https://www.irs.gov/newsroom/one-big-beautiful-bill-provisions>

개인 소득세

2025 Ordinary-Income Tax Brackets				
Tax Rate	Single	Head of Household	Married Filing Jointly or Surviving Spouse	Married Filing Separately
10%	\$0 - \$11,925	\$0 - \$17,000	\$0 - \$23,850	\$0 - \$11,925
12%	\$11,926 - \$48,475	\$17,001 - \$64,850	\$23,851 - \$96,950	\$11,926 - \$48,475
22%	\$48,476 - \$103,350	\$64,851 - \$103,350	\$96,951 - \$206,700	\$48,476 - \$103,350
24%	\$103,351 - \$197,300	\$103,351 - \$197,300	\$206,701 - \$394,600	\$103,351 - \$197,300
32%	\$197,301 - \$250,525	\$197,301 - \$250,500	\$394,601 - \$501,050	\$197,301 - \$250,525
35%	\$250,526 - \$626,350	\$250,501 - \$626,350	\$501,051 - \$751,600	\$250,526 - \$375,800
37%	Over \$626,350	Over \$626,350	Over \$751,600	Over \$375,800

Taxable income이 Single 혹은 Head of Household인 경우 \$626,350, 부부 공동보고인 경우 \$751,60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최고 세율 37%가 적용된다. 이전의 소득 구간에는 최저 10%에서 35%의 세율이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항목별 공제의 변화

- State and local tax - 최대 \$40,000 까지만 공제 허용(소득이 일정액을 초과할 경우 단계적 감소). CA의 AB150법규로 인해 S Corp이나 파트너십이 주주들의 2025년도 CA개인소득세를 대납하였을 경우 당 사업체의 net income을 줄일 수 있다.
- 총 의료 비용 중에서 AGI의 7.5%를 초과하는 액수에 대하여 공제 가능.
- 현금 기부금 공제 - AGI의 60%까지 공제받는다. Non-operating private foundations에 기부하였을 경우 20% 혹은 30%에 해당하는 액수까지 공제 가능.
- 홈모기지 융자금 이자 공제 - 2017년 12월 15일 이후에 발생한 홈모기지는 융자 금액 \$750,000에 대한 이자 금액만 공제된다(홈에퀴티 융자금에 대한 이자 비용은 주택의 구매, 증축, 상당한 개선 등에 사용된 경우에만 공제대상).
- 고소득자에게 적용되었던 항목별 공제금액 감소 조항이 2025년까지 폐지된다.
- 폐지된 공제항목 - Unreimbursed employee expenses, 세금보고 수수료, 위자료 지급금액, Investment expense, Moving expense, Personal casualty losses 등.

중여/상속세 (Estate and gift tax)

2025년 개인 당 평생 누적 세금면제 액수는 \$13,990,000(\$15,000,000 for 2026)이며 부부 공동보고인 경우 \$27,980,000로 상향 조정되었고 세율은 18%-40%(미국내 재산만 해당). 비시민권자인 배우자에게 증여시 \$190,000(\$194,000 for 2026)만 면제된다. 증여세 보고를 면제받게 되는 연간 면제 금액은 수혜자 당 \$19,000 (\$19,000 for 2026)이다. 적절한 living trust 를 설립하여 상속/증여세를 최대한 절약하는 합법적인 절세 방법을 찾을 수 있다.

건강보험 미가입 벌금

2025년도에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가구소득(household AGI)의 2.5% 또는 보험 미가입 가족 구성원 성인 1명당 최소 \$950(18세 미만인 경우에는 한 명당 \$475) 중 더 큰 액수가 벌금으로 부과된다(건강보험 미가입 벌금은 2019년도 1월 1일부터 폐지 되었지만, CA에서는 AB414법안에 의해 2020년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 의무 가입 조항이 재도입 되었다).

2025년도 세금보고관련 주요 개정세법 사항

Retirement Plan

	2025 Limit	2026 Limit
401(k), 403(b), 457 (b) Elective Deferral	\$23,500	\$24,500
401(k), 403(b), 457 (b) Catch-up (age 50+)	\$7,500	\$8,000
401(k), 403(b), 457 (b) Super Catch-up (age 60-63)	\$11,250	\$11,250
IRA Contribution (Traditional & Roth)	\$7,000	\$7,500
IRA Catch-up (age 50+)	\$1,000	\$1,100
SIMPLE Plan Deferral	\$16,500	\$17,000
SIMPLE Catch-up (age 50+)	\$3,500	\$4,000
Annual Defined Contribution Limit	\$70,000	\$72,000
Defined Benefit Limit	\$280,000	\$290,000
Annual Compensation Limit	\$350,000	\$360,000

2025년도에 73세가 되었을 경우 2026년 4월 1일까지 세제혜택을 받은 은퇴/연금계좌(Trad. IRA, SEP IRA, 401k 등)에서 적당한 액수(Required Minimum Distributions)를 인출해야한다.

기타 주요 세법 개정안

- 20만불(Single), 25만불(부부공동보고)을 초과하는 급여소득과 자영업소득에 대해 0.9%의 Medicare HI tax가 부과된다. 2026년도에는 \$184,500까지 social security tax 적용
- 20% of Qualified Business Income 공제 - 자영업자, S Corp.과 LLC 등의 지분 소유자는 큰 세금혜택을 볼 수 있음(taxable income이 \$394,600(부부공동보고) \$197,300(기타) 미만일 경우)
- Net Operating Loss - 2021년부터 발생한 NOL은 carryback을 할 수 없고 영구적으로 carryforward만 가능하며 해당년도 taxable income의 최대 80% 까지만 차감할 수 있다(2018, 2019, 2020년도에 발생하는 NOL은 carryback을 5년 할 수 있고 나머지 잉여 NOL은 무한하게 carryforward할 수 있다).
- Excess Business Loss Limitation - 개인 사업자의 경우 순사업손실이 발생했을 때 최대 \$313,000(Single, \$256,000 for 2026), \$626,000(MFJ, \$512,000 for 2026)까지 기타 다른 소득에서 차감하고, 잉여손실은 다음 해로 이월되며 NOL rule을 따르게 된다.
- Sec. 179 감가상각비 - 사업에 사용되는 고정자산 구입 시 최고 \$2,500,000(\$2,560,000 for 2026)까지 일시불로 비용 공제를 받을 수 있고 Sec. 179자산이 \$4,000,000 ~ \$6,500,000 사이에서 phase out 된다.
- Business Interest Expense Deduction Limitation - 지난 3년간 평균 총매출이 3천1백만불이 넘는 사업체에서 발생한 사업 용자금의 이자비용은 adjusted taxable income의 30% 제한 등등에 의해 공제되고 초과 비용 부분은 다음 해로 이월된다(대부분의 소규모 사업체는 이 규제에서 제외).
- 현금주의 회계처리 - 최근 과거 3년간 평균 연매출이 3천1백만불 미만(2026년에는 3천2백만불)인 사업체는 현금주의로 세금보고를 할 수 있고 uniform capitalization rule에서 면제된다(Form 3115 제출 필요).
- Standard deduction - 부부 공동보고 시 \$31,500, Single 혹은 Married Filing Separately 은 \$15,750, Head of Household는 \$23,625이다(65세 이상 혹은 blind인 경우 - 부부 공동보고 시 1인당 \$1,600 / Single인 경우 \$2,000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당 공제는 2019년도부터 폐지되었다).
- Sec. 1031 (과세연기 매매) - 부동산 매매 경우에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8년 1월1일부터).
- Child tax credit - 자격조건에 맞는 17세 미만 자녀당 \$2,000이며 최고 \$1,700까지만 세금환불이 가능하다. 단, 총수입이 20만불(single) 40만불(부부공동보고) 이하일 경우.
- Credit for child care expenses - 13세 미만 1자녀당 최대 \$3,000, 두 자녀 이상인 경우 \$6,000까지 가능하다. 최고 크레딧액은 35%에 해당하는 \$1,050 혹은 \$2,100까지만 가능하고 AGI가 \$43,000이 넘을 경우 최고 20%까지 받을 수 있다.
- Earned income credit - 자녀가 세명인 부부 기준으로 AGI가 \$68,675 한도 내에서 소득세를 줄여줄 뿐 아니라 최고 \$8,046 까지 환불 받을 수 있다. 만약 자녀가 없고 싱글일 경우에도 근로소득이 \$19,104 인 경우 최고 \$649 까지 환불 받을 수 있다.
-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 2024년도에는 \$130,000 이다(2026년 - \$132,900).
- 2025년도 IRA 최고 납입액은 \$7,000이고 50세 이상은 \$8,000까지 가능(납부 마감일은 4/15/26).
- 캘리포니아 최저임금: 2026년 1월부터 \$16.90(\$20.00 for fast food workers)으로 인상되었다. LA시의 최저임금은 2026년 1월 16일부터 \$17.87으로 인상되었고 (LA 카운티 - \$17.81)으로 인상된다. 직원을 15명 이상 고용하는 사업체는 채용공고 시 급여수준을 공개해야 한다.
- 학자금 부채탕감 - 2021년~2025년까지 과세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음.



세금 보고 자료 TAX ORGANIZER for Tax Year 2025

Date: / /

본인 성명: _____ 배우자 성명: _____
 S.S.N.: _____ S.S.N.: _____
 집주소: _____
 직업: _____ 직업: _____
 생년월일: _____ 생년월일: _____
 전화번호 (H) _____ (CP) _____ (E-Mail) _____
 Single Married Filing Joint Head of Household Married Filing Separate Widower

자녀 및 부양 가족 (Dependents)

성명	생년월일	S.S.N.	관계	거주기간

통급과 임금 (Salaries, Wages, Tips, etc.) Form W-2를 반드시 동봉하세요.

고용주 이름	총수입	연방소득세 (FIT)	FICA	주소득세(SIT)	SDI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Interest income & Dividend income) Form 1099-INT 과 1099-DIV를 동봉하세요.

지불회사	이자금액	배당금액	세금 공제액

해외 금융계좌 (\$10,000 초과) 유/무 확인 있습니다 없습니다 | 2025 년 동안 가상화폐를 받았거나, 팔았거나, 교환하였거나
 해외 금융자산 (\$50,000 초과) 유/무 확인 있습니다 없습니다 | 혹은 지분을 소유한적이 있습니까? Yes ____ No ____

기타소득 및 세금공제 항목

기타소득 (Other Income)		공제항목 (Other deductions)	
주 소득세 환불금액 (State tax refund)		은퇴구좌 지불액 (IRA Contribution - Trad or Roth)	
위자료 금액 (Alimony)		학생용자 지불이자 (Student loan interest)	
사회보장금 (Social security benefits)		SEP / Pension 지불금액	
Gambling / 실업수당		SE health insurance / Moving expense	
Form 1099-R (Pension & IRA)		예금 조기인출 벌금	
Unemployment Income		Educational Expenses	

Schedule A – 항목별 세금공제 (Itemized deductions)

의료비		세금 지불액	
의료보험비 납부액		주 소득세 지불금액 (State tax)	
병원비와 치료 비용		부동산 재산세 (Property tax)	
약값		자동차 면허세 (DMV Registration)	
안경, 보청기 등 기타		Sales tax on big purchases	
병원 교통비			
기부금		이자 지불액 (관련 서류를 동봉하세요.)	
교회 헌금 – cash		Home mortgage interest	
기부금 – property value		Equity loan interest	
		Loan points (refinanced?)	

건강보험 / 오바마케어 (오바마케어 가입자는 1095-A 첨부)

해당되는 건강보험에 체크 하세요

가족 구성원 이름	보험가입여부	가입기간	일반/직장보험	오바마케어	1095-A
1.	네()/아니오()	년/ 개월			
2.	네()/아니오()	년/ 개월			
3.	네()/아니오()	년/ 개월			
4.	네()/아니오()	년/ 개월			
5.	네()/아니오()	년/ 개월			

자녀의 탁아 비용 (부부가 모두 일할 경우 혜택)

탁아원 이름과 주소:	
고용주 번호(Employer identification no.):	
지난 1년 동안의 비용:	

기타 공제 항목

개인적 도난 손실 (\$100 이상)		Tax prep. fee	
Job related expenses		Uniform cleaning	
Tools and equipment		Investment expenses	
Safety deposit box		Gambling Loss	

Schedule E – 건물 임대료 수입 및 지출 (Rental Property Income and Loss)

건물 주소 (Rental property address):	
임대료 수입 (Rental income / Royalty income)	
기타 수입 (Other income – laundry, payphone, vending machine, interest income, etc.)	

지출 비용 (Rental expenses)

광고 (Advertising)		Utilities	
수리 관리비 (Repair and maint.)		정원 관리비	
보험 (Insurance)		Painting	
감가 상각비 (Depreciation)		관리 용역비 (Management fee)	
이자 (Interest expense)		Plumbing	
Professional fees		Telephone	
사무용품 (Office expense)		Supplies	
세금 및 등록 (License and tax)		Travel	
Property tax		Internet	
Auto-mileage			

Schedule C – 개인 사업 소득 및 지출 (Self - employed Business profit and loss); Attach Form 1099

사업체 명 (Business name): _____

사업체 업종 (Principal activity of business): _____

사업체 주소 (Business address): _____

고용주 번호 (Employer ID number): _____

Gross Income		운영경비 (Operating expenses)	
		광고 (Advertising)	
기초 상품 재고 (Beg. Inventory)		Rent expense	
당기 상품 매입액 (Purchases)		종업원 월급 (Salaries and wages)	
임금 (Labor / outside service)		사무용품 (Office expense)	
재료비 및 기타 (Materials)		Utilities	
기말 상품 재고 (End Inventory)		자동차 비용 (Auto expense)	
		Supplies	
수리 관리비 (Repair and maint.)		세금 및 등록 (License and tax)	
장비 임대료 (Equipment rental)		Professional fees	
보험 (Insurance)		이자 (Interest expense)	
Meals & Entertainment		Employee benefits	
Telephone		판매 수수료 (Sales commission)	
Website / Internet		Travel	

주식 매매 / 주택 매매 / Schedule K-1 (관련서류를 동봉 하세요.)

회사 이름	구매 주식 수와액수	구매 날짜	판매 날짜	판매 주식 수와액수	차액 소득(손실)

Schedule K-1 income and deductions:

세금 예납 (Estimated tax payments) - Paid in 2025

예납일자	IRS	State	예납일자	IRS	State

LAWRENCE JEON & CO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전석호 공인회계사

학력

서울 고등학교 졸업
고려 대학교 재학
UCLA 경제/경영학 우등 졸업
Economics/Business 전공
Golden Gate Univ. 대학원
세법학 석사 전공

경력

미국 4대 회계법인 - Tax Manager
Forever 21 - Consultant
HUFs LA Global CEO - 회장
KACPA Society - President
Korean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 이사
35년 경력

전한나 공인회계사

학력

UCLA 경제학 졸업

경력

KPMG Peat Marwick - Tax division
CFO - Private Companies
Notary Public (공증)
36년 경력

기본업무 지사 및 회사를 California 혹은 타주내 설립/등록/청산/상호변경 **기본회계업무**: Compilation, **국제관계세무상담전문** 비영리단체(학교, 교외등)의 회계업무 **사업 용자달성** IRS, FTB, 노동청 등 과의 세무 감사대행 **Payroll서비스**: 종업원 paycheck 발행 및 고용주 세금보고 유학생, 관광비자등으로 입국한 사람이 합법적으로 세금보고 할 수 있는 수속대행 각종 사업체 경영 및 재정 분석과 사업계획 (Business Planning) 하여드립니다